

제 1674 호
1992. 7. 30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이 상
편집인 : 공 보 관 이 상
전화 : 791-0111-0
연 계 : 한국정보통신(연계)주식회
사 : 225-0111-3

시 보

차 례

● 금 격

제 2486 호 서울특별시연사금격개정규칙 -

규 칙

서울특별시인사규칙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2. 7. 30

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

●서울특별시규칙제2486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인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소속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에 필요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서울특별시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기관(본청): 담당관, 실, 과의 주무계장
2. 소속기관(사업소): 과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는 주무과 주무계장, 부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는 주무부 주무과장, 과가 없는 사업소는 주무계장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일반직 및 기

능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2. 서울특별시제2인사위원회

②제1항 각호의 인사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조(내부위임) ①시장은 3급 이상 공무원울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병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5급 이하 공무원,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2호 다목 해당 연구관·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면직
2.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시보임용해제

②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농촌지도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면직
2. 7급 이하 공무원,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특별임용을 제외한다) 및 시보임용해제

③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

<p>권을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면직 8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특별임용을 제외한다) 및 시보 임용해제 <p>④시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소방본부장에게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보임용해제·당해 기관 내의 전보·휴직·직위해제·복직 및 면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p> <p>⑤사업소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규임용시험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과 9급 보전직(방사선·병리·물리분야에 한한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제1항의 규정은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 외의 국가공무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p> <p>제7조(권한의 위임) ①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급 이하 공무원,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2호 다목 해당 연구관·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당해 기관 내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교관임용 및 교관분야별 담당지정(공무원교육원장에 한함) 소속공무원의 승급 <p>②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농촌지도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당해 기관 내 전보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공무원의 승급 <p>③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당해 기관 내 전보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소속공무원의 승급 <p>④제1항의 규정은 5급 공무원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속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8조(임용권 위임의 일부 제한) ①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과의 전입요청 및 전출 동의는 시장이 행한다. ②기구 및 정원의 조정이나 기관간 상호 인사교류, 결원보충 또는 승진임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제2장 시험</p> <p>제9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에 시행할 공개경쟁시험의 연간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에 시행한 신규임용 시험·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실시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작성·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등)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실시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실시일 10일 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 또는 방송 기타 포괄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	--

<p>②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p> <p>제1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2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실시관의</p>	<p>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응시절차사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p> <p>제13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계</th> <th>급</th> <th>공개경쟁임용시험</th> <th>특별임용시험</th> </tr> </thead> <tbody> <tr> <td>5급·연구관 및 지도관</td> <td></td> <td>20세 이상~40세까지</td> <td></td> </tr> <tr> <td>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td> <td></td> <td>20세 이상~40세까지</td> <td>20세 이상~45세까지</td> </tr> <tr> <td>8급 및 9급</td> <td></td> <td>18세 이상~35세까지</td> <td>18세 이상~40세까지</td> </tr> <tr> <td>기능직 7등급 이상</td> <td></td> <td>18세 이상~40세까지</td> <td>20세 이상~45세까지</td> </tr> <tr> <td>기능직 8등급 이하</td> <td></td> <td>18세 이상~35세까지</td> <td>18세 이상~40세까지</td> </tr> </tbody> </table>	계	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		20세 이상~40세까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20세 이상~40세까지	20세 이상~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 이상~35세까지	18세 이상~40세까지	기능직 7등급 이상		18세 이상~40세까지	20세 이상~45세까지	기능직 8등급 이하		18세 이상~35세까지	18세 이상~40세까지	
계	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5급·연구관 및 지도관		20세 이상~40세까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20세 이상~40세까지	20세 이상~45세까지																						
8급 및 9급		18세 이상~35세까지	18세 이상~40세까지																						
기능직 7등급 이상		18세 이상~40세까지	20세 이상~45세까지																						
기능직 8등급 이하		18세 이상~35세까지	18세 이상~40세까지																						
<p>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그 최초 시험실사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p> <p>제14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p> <p>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p> <p>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p> <p>나. 연구사의 경우: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p> <p>다. 지도사의 경우:고등학교 이상의 졸</p>	<p>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p> <p>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3호 내지 제10호 또는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p> <p>가. 연구관의 경우: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p> <p>나. 지도관의 경우: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p> <p>다. 연구사의 경우: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p> <p>라. 지도사의 경우: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p> <p>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서의 전직</p>																								

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
가. 연구직 공무원: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5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는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에우동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7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때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8조(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적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로서 동 자격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1. 2급 및 3급은 6년 이상
2. 4급은 3년 이상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2회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3년 이상, 약사·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5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 자격증소지자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 등급은 별표 8과 같다.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직급상당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

<p>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 또는 동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계급 및 그 해당 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p>⑤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전 5년 이내에 졸업한 자로서 소정의 실무 수습을 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10과 같다.</p> <p>⑥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3 및 별표 11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 및 별표 11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계급은 다음과 같다. 	<p>출신학력별 임용예정계급</p>
	<p>대학 졸업자 6급, 7급, 연구사, 기능직 6등급·7등급</p>
	<p>전문대학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기능직 7등급·8등급</p>
	<p>고등학교졸업자 9급, 기능직 9급 이하</p>
<p>⑦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2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 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p> <p>⑧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계급은 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p> <p>⑨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환경보건·공해·통계·지역경제계획·전산 및 지역개발 분야로 하며 이외의 전문분야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후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도 한다.</p> <p>제20조(복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p> <p>제21조(복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복수한 직무분야 및 환경하에 근무할 기능직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육·조무 및 방호직렬 공무원 2. 위생직렬의 사력직류 공무원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5·별표 6 및 별표 8에 의한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3과 같다.

제 3 장 임 용
제 1 절 신규임용

제23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장기간인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4.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에 대한 임용권자별 추천은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의 적정을 기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 ①영 제8조의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은 노동부장관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 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 이상의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검정 합격증에 한한다.

②영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그 검정시험의 기관과 합격결정 등에 관하여 공무원 임용시의 타자능력검정규정(총리령)을 준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검정시험의 실시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또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검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에서 타자능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검

정시협용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후보자는 신규임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보고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그 다음 분기의 첫달 10일까지 내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전보임용

제29조(전보기준) ①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별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체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기관 내에서의 전보는 순환방법에 의거 전보단위부서 장기 근속자 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간 전보는 기관 순환전보 체계를 설정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전보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근부부사 배치) ①공무원의 근부부사 배치는 본청은 담당관·과별로, 사업소는 기관단위별로 한다.

②본청의 담당관 또는 실·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을 제별로 배치하고 계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③사업소장은 제1항에 의하여 배치된 공무원을 실·과 단위별로 발령(계장급은 계까지)하고, 실·과장이 제별로 배치하며, 계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31조(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의한 연구관 및 지도관의 직위는 별표 14와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 및 지도직별직위에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

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목에 정한 인적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제32조(전보제한) ①영 제27조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을 받는 직제상의 최하단위 보조기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은 직제상 당해직위 단위로 한다.

- 1. 본청-실, 과, 담당관
- 2. 사업소(병원, 보건환경연구원 제외)-부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는 부, 과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는 과단위

②영 제2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통계 및 민원창구공무원
시민1과, 시민2과, 통계담당관
- 2. 감사담당공무원
감사1담당관, 감사2담당관, 조사담당관
- 3. 세무담당공무원
세정과, 세무지도과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①영 제7조의2 제4항과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에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5와 같다.

②일반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9의 특별임용계급상당경력기준표를 준용하며 그 외의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절 승진임용

제34조(승진임용의 원칙) ①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7급 이하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심사승진은 다음 각호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청렴도, 경력, 훈련성적, 신망도, 기타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되 민원

담당과 특수 공적자를 우대한다.

2. 제1호에 의한 심사승진은 승진예정인원 전원을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승진심사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다만, 승진심사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의한다.

③기타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승진시험) ①7급 이하 시험승진은 별표 16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방법으로 실시하되 200점 만점으로 한다.

②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임용 예정자의 합격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6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승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승위명부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때에는 제2차 시험성적을, 통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때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승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

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승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횡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횡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승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37조(연구실적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연구및지도직규정 제1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고 연구직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연구사들이 동 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실적의 평가를 위해 동 규정 제13조제5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내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위원장을 포함한 연구관(부장급 직위) 중에서 2인,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직원 중 심사대상 연구논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위원 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보건연구직의 기타 직렬(환경, 하예, 공업, 농업 등)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연구관 또는 소속부서의 상위직위에 있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8조(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

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7과 같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9조(승급) ①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의거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승급은 사전에 당해 공무원의 승급제한 사유 저축여부와 근무성적평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절 평 정

제40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의 포상가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가점평정대상이 되는 표창 및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내부부의 청백봉사상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1.0점
- 2. 시·도의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0.25점
다만, 서울특별시모범공무원 표창계획에 의한 표창과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에 의한 공무원상 0.5 점

제41조(특수지근무경력 등의 가점) ①공무원이 정기평정기준일로부터 10년(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 이내에 당해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원창구 등에서 6월 이상 근무

한 경력(연구사, 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제직된 기간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단서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국가공무원 및 다른 시·도 지방공무원 제직시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제1항, 제3항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정부합동민원실 및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 등에서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해당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하여 평정하며, 서울특별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지도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제직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의 대상이 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 해당계급의 근무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 1. 특수지 감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지, 나지)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 2. 특수지 읍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지) 또는 울림립준비단, 동사무소, 국민운동지원분야, 자동차관리사업소(지소를 포함한다),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사업소, 차량정비사업소(기능직에 한함)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35점
- 3.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25 점
- 4. 민원실(본청: 시민1과, 시민2과, 행정법규상담실, 구청: 시민봉사실) 및 정부합동민원실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75점

②제1항에 의한 가산점은 1.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③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 중 훈련성적평정점으로 계산되는 교육훈련의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점수를 가점한다.

- 1. 30일 이상 90일 이하-0.25점
- 2. 90일 초과 180일 이하-0.5점
- 3. 180일 초과-0.75점

④제1항에 의한 가산점은 정기평정일 현재까지의 동일 가점 분야에서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근무경력기간 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정격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제42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가점의 합산) 제40조, 제41조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점해당자에 대하여는 2.25점의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제5절 정년연장

제43조(정년연장신청) 정년연장대상자로서 정년연장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 전 3월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정년연장심의회위원회 구성 등) ①시장이 소속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년연장심의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연장 심의는 서울특별시 제1,2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

다.

③정년연장 심의는 서류에 의하여 행하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5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시장은 정년연장신청자에 대한 정년연장 승인여부를 정년퇴직일 전 50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소속기관장과 신청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인사지도감독

제46조(인사지도 감독) ①인사행정 운영의 적정여부를 지도하고 기간간 인사 실무집행의 균형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자치구와 소속행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이 규칙 또는 관계법규에 위배된 비위사실이 적출되었을 경우 이를 시장 지시하거나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여야 한다.

제47조(지도감독 범위) 인사행정의 지도감독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임용에 관한 사항
- 2. 시험에 관한 사항
- 3. 평정 및 서열명부에 관한 사항
- 4. 징계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5. 기타 인사행정 실효과에 관한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의 포상가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제40조에 의한 가점을 적용한다.

③(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별표 1)				
기능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 및 특별임용 시험과목(제10조 관련)				
시험 구분	공 개 경 쟁 임 용		특 별 임 용	
	필 수	선 택	필 수	선 택
철 도 현 업	운전	국어(한문포함), 철도차량, 국사, 국민윤리, 철도법		국사, 국민윤리 철도법, 철도차량중 1과목
	운수	국어(한문포함), 국사, 정치경제, 국민윤리, 철도법		국사, 국민윤리 철도법, 철도차량중 1과목
	전기 및 신호	국어(한문포함), 전기통론, 국사, 국민윤리, 전기통신법규		국사, 국민윤리 전기통론, 철도법 중 1과목
	점수	국어(한문포함), 전기통론, 국사, 국민윤리, 기계공학법		국사, 국민윤리 철도법, 기계공학 일반 중 1과목
	선로	국어(한문포함), 철도법, 국사, 국민윤리, 궤도정비규정		국사, 국민윤리 철도법, 궤도정비규정 중 1과목
	통신	국어(한문포함), 전기통론, 국사, 국민윤리, 전기통신법규		국사, 국민윤리 전기통론, 통신공학 중 1과목
토 목	물리, 국어(한문포함), 측량, 국사, 국민윤리, 응용역학, 토목설계		국사, 국민윤리 측량, 응용역학 중 1과목	
건 축	물리, 국어(한문포함), 건축구조, 국사, 국민윤리, 건축계획	구조역학, 건축시공학, 도시계획중 1과목	국사, 국민윤리	건축구조, 건축계획 중 1과목
통 신	물리, 국어(한문포함), 국사, 국민윤리, 유선공학개론, 전기통신법규		국사, 국민윤리	전기통론, 유선공학개론 중 1과목

시험 구분	공 개 경 경 입 용		특 별 임 용	
	필 수	선 택	필 수	선 택
전 기	물리, 국어(한문포함), 전력, 국사, 국민윤리, 전기통신, 전기기계		국사, 국민윤리	전기통신, 전력 중 1과목
기 계	물리, 국어(한문포함), 기계재료, 국사, 국민윤리, 기계공학일반		국사, 국민윤리	기계공학법, 기계설비 중 1과목
선 박	물리, 국어(한문포함), 국사, 국민윤리, 선박기관		국사, 국민윤리	선박기관
운 전	국어(한문포함), 국사, 국민윤리, 도로교통법		국사, 국민윤리, 도로교통법	
교 환	물리, 국어(한문포함), 국사, 국민윤리, 전기이론, 통신관계법규		국사, 국민윤리	전기이론, 통신관계법규 중 1과목
농 립	생물, 국어(한문포함), 국사, 국민윤리, 조림, 임업경영		국사, 국민윤리	조림, 임업경영중 1과목
사 육	생물, 국어(한문포함), 국사, 국민윤리, 축산, 가축영양사료		국사, 국민윤리	축산, 가축영양사료 중 1과목

시험 구분	공 개 경 경 입 용		특 별 입 용	
	필 수	선 택	필 수	선 택
위 생	생물, 국어(한문포함), 국사, 국민윤리, 공중보건, 환경위생		국사, 국민윤리	공중보건, 환경위생 중 1과목
사 무 보 조	국사, 국민윤리		국사, 국민윤리	
조 무	국사, 국민윤리		국사, 국민윤리	
방 호	국사, 국민윤리		국사, 국민윤리	
<p><별표 2></p> <p>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제11조제2항 관련)</p>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공개경쟁신규 입 용 시 험	승진시험	비 고
1	제직증명서 1부		○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한함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		해당자에 한함
3	주민등록표 초본 1통	○		
4	신원증명서 1부	○		시·구, 읍·면장 발행
5	채용신체검사서 1통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 한 의료기관 발행
6	복무확인서 1부	○		현역군인에 한함
7	자격증(기술자격 수첩 포함) 또는 면허증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8	취업보호대상자 증명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 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9	학교생활기록관계 서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0	시험요구서 1부		○	

〈별표 3〉		
연구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구분표(제14조 관련)		
직별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류	
학예연구	학예연구	국문학, 고고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미술학(회화, 조소, 공예) 건축학(건축사) 또는 음악(국악, 기악, 성악, 작곡)을 이수한 자
편사연구	편사연구	역사학을 이수한 자
공업연구	기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또는 기계설계학을 이수한 자
	전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물리학을 이수한 자
	전자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전자계산기공학을 이수한 자
	금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이수한 자
	유체	유체공학학을 이수한 자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식품공학 또는 요업공학을 이수한 자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또는 공업경영학을 이수한 자
	농업	농업공학, 농화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농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이수한 자
농업연구	원예	원예학을 이수한 자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또는 농경제학을 이수한 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또는 생물학을 이수한 자
	잠업	잠사학 또는 생물학을 이수한 자
	축산	축산학, 수의학 또는 동물학을 이수한 자
	가축위생	
	농공	농업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또는 토목공학을 이수한 자
보건연구	보건연구	의학, 미생물학, 치의학, 약학, 한의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동물학, 낙농학, 보건학 또는 위생공학을 이수한 자
	환경연구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생물학 또는 해양계통의 학과를 이수한 자
비고 : 위 표에서 각 해당 "학과를 이수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교육대학을 제외한다)에서 그에 해당하는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4> 지도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직렬	지	도	판
농촌지도	농업계통학과를 이수한 자		농업계통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생활지도	식품가공학, 농가경영, 영양학, 식품영양학, 농산제조학, 농화학, 아동학, 가정교육학, 가정복지학, 또는 주생활학과를 이수한 자		농업계통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비고 : 위 표에서 각 해당 "학과를 이수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교육대학 제외)에서 그에 해당하는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별표 5>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전직시험응시자격증 및 전직시험면제자격증구분표(제20조 및 제22조 관련)			
1.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 급 이 상	6 급 · 7 급
전산	전 산	정보처리기사 1급 이상	정보처리기사 1급
사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수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무	일반의무 치 무 의료기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무	약 무 약 제	약 사 약 사	약 사 약 사
간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선박	일반선박	1급·2급 항해사 1급·2급 기관사 1급 통신사	3급·4급 항해사 3급·4급 기관사 2급 통신사
	선박항해	1급·2급 항해사	3급·4급 항해사
			5급·6급 항해사 5급·6급 기관사 3급 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5급·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직렬	계급		5 급 이 상	6 급 · 7 급	8 급 · 9 급
	직류				
선박	선박기관		1급·2급 기관사 1급 통신사	3급·4급 기관사 2급 통신사	5급·6급 기관사 3급 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지적	지 적		지적기사 1급	지적기사 2급	지적기사 2급
비고: 위 표 중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 직렬 동 직류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구분표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직렬	계급		5 급 이 상	6 급 · 7 급	8 급 · 9 급
	직류				
지적	지 적		국토개발기술사 (지적)	지적기사 1급	지적기사 2급
비고: ① 위 표 중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 직렬 동 직류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② 6급의 경우는 6, 7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8급의 경우는 8·9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1년 6개월의 기간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직렬	계급		5 급 이 상	6 급 · 7 급	8 급 · 9 급
	직류				
사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수의	수 의		수의사(5)	수의사	가축인광수정사
외무	일반외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외사		
	의료기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부	약 부		약 사(5)	약 사	
	약 계		약 사(5)	약 사	
간호	간 호		조산사(8) 간호사(8)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선박	일반선박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2) 6급 항해사(4)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2) 6급 기관사(4)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직렬	계급		5 급 이 상	6 급 · 7 급	8 급 · 9 급
	직류				
선박	선박항해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2) 6급 항해사(4)
	선박기관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2) 6급 기관사(4)

비고 : ① 위 표 중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 직렬 동 직류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② () 안의 숫자는 해당 직급에 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경력이어야 한다.

③ 6급의 경력요건은 6, 7급의 경력요건에서 2년의 경력을 8급의 경력요건은 8, 9급의 경력요건에서 1년 6월의 경력을 추가한다.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외의 기술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구분표(제19조 및 제22조 관련)

1.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직렬	계급		5 급 이 상	6 급 · 7 급	8 급 · 9 급
	직류				
기계	일반기계		기계기술사 안전관리기술사 (기계안전) 생산관리기술사 { 공정관리 품질관리 }	기계기사1급 건설기계기사1급 소방설비기사1급 품질관리기사1급 산업안전기사1급 공정설계기사1급 용접기사1급 열관리기사1급 계량기사1급	기계기사2급 건설기계기사2급 소방설비기사2급 품질관리기사2급 산업안전기사2급 계량기사2급
		농업기계	기계기술사 생산관리기술사 (품질관리) 안전관리기술사 (기계안전)	농업기계기사1급 기계기사1급	농업기계기사2급 기계기사2급
	운전	기계기술사 (교통차량)	기계기사1급 계량기사1급 자동차검사기사1급 산업안전기사1급	철도·차량기사1급 계량기사1급 자동차검사기사1급 산업안전기사1급	철도·차량기사2급 계량기사2급 자동차검사기사2급 산업안전기사2급

직렬	계급		5 급 이 상	6 급 · 7 급	8 급 · 9 급
	직류				
기계	윤	진	안전관리기술사 [기계안전]	치공구설계기사1급 중기정비기사1급 공기조화 및 냉동기계 기사1급 공정관리기사1급 자동차정비기사1급	치공구설계기사2급 중기정비기사2급 공기조화 및 냉동기계 기사2급 공정관리기사2급 자동차정비기사2급
전기	일반전기		전기기술사 안전관리기술사 [전기안전]	신호보안기사1급 산업안전기사1급 전기기사1급 전기공사기사1급 품질관리기사1급 소방설비기사1급	신호보안기사2급 산업안전기사2급 전기기사2급 전기공사기사2급 품질관리기사2급 소방설비기사2급
	전자		전자기술사	전자기사1급 계측제어기사1급 품질관리기사1급 전자계산기사1급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1급	전자기사2급 계측제어기사2급 품질관리기사2급 전자계산기사2급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2급
	원자력		에너지기술사	원자력기사1급	원자력기사2급
섬유	섬	유	섬유기술사	섬유기사1급 생사기사1급 품질관리기사1급 의류기사1급	섬유기사2급 생사기사2급 품질관리기사2급 의류기사2급
화학	일반화학		화학기술사 산업응용기술사 [요업] 안전관리기술사 [화학안전]	화학기사1급 화학류제조기사1급 소방설비기사1급 요업기사1급 공업화학기사1급 품질관리기사1급 산업안전기사1급	화학기사2급 화학류제조기사2급 소방설비기사2급 요업기사2급 공업화학기사2급 품질관리기사2급 산업안전기사2급
조선	조	선	조선기술사	조선기사1급 선박기계기사1급	조선기사2급 선박기계기사2급

직렬	계급		5 급 이 상	6 급 · 7 급	8 급 · 9 급
	직류				
금속	금	속	금속기술사	금속기사1급	금속기사2급
	야	금		품질관리기사1급	품질관리기사2급
채광	채	광	광업기술사	광산보안기사1급 광산기사1급	광산보안기사2급 광산기사2급
농업	일반농업		산업용용기술사	농화학기사1급	농화학기사2급
	식물방역		[식품제조가공] [농 화 학] [종 묘]	원예종묘기사1급	원예종묘기사2급
				식품제조가공기사1급 식물보호기사1급	식품제조가공기사2급 식물보호기사2급
잠업		섬유기술사 (생사)	섬유기사1급 생사기사1급	섬유기사2급 생사기사2급	
임업	일반임업		산업용용기술사	임산가공기사1급 조경기사1급 임업종묘기사1급	임산가공기사2급 조경기사2급 임업종묘기사2급
			[종 묘] [임산가공] [영 립] [농 화 학]		
	산림보호 가공이용		국토개발기술사 (조경)	영림기사1급 농화학기사1급	영림기사2급 농화학기사2급
축산	축	산	축산기술사	축산기사1급	축산기사2급
보건	보	건	환경관리기술사	식품제조가공기사1급 환경기사1급	식품제조가공기사2급 환경기사2급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산업용용기술사 (식품제조가공)		
환경	환	경	환경관리기술사	지역 및 도시계획기사1급 조경기사1급 환경기사1급	조경기사2급 환경기사2급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기상기사1급 화공기사1급 토목기사1급 전기기사1급	기상기사2급 화공기사2급 토목기사2급 전기기사2급
			화공기술사 토목기술사 전기기술사		

직렬	계급 직류	5 급 이 상			6 급 · 7 급			8 급 · 9 급																																		
		환경	환경	산업용용기술사 [식품제조가공 지구물리 농 화학] 해양기술사 안전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농화학기사1급 해양기사1급 산업위생관리기사1급 식품제조가공기사1급	농화학기사2급 해양기사2급 산업위생관리기사2급 식품제조가공기사2급	수산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중식 어 로 수산물검사	산업용용기술사 [수산제조] 해양기술사 환경관리기술사 [수산관리]	수산제조기사2급 수산양식기사1급 해양기사1급 환경기사1급 어로기사1급	수산제조기사2급 수산양식기사2급 해양기사2급 환경기사2급 어로기사2급	토목	일반토목 수도 토목	토목기술사 국토개발기술사 [지역 및 도시계획]	토목기사1급 측지기사1급 건설안전기사1급 지역 및 도시계획기사1급 토목재료시험기사1급 계량기사1급	토목기사2급 측지기사2급 건설안전기사2급 토목재료시험기사2급 계량기사2급	농업토목	토목기술사 [관개배수 및 농지조성 토질 및 기초시공 수자원·구조]	토목기사1급 측지기사1급	토목기사2급 측지기사2급	건축	건축	건축기술사 건축사	건설안전기사1급 건축기사1급	건설안전기사2급 건축기사2급	측지	측 지	측지기사1급	측지기사2급	통신사	통신사	전기통신기술사	전파통신기사1급	전파통신기사2급	통신 기술	통신기술	전기통신기술사	유선설비기사1급	유선설비기사2급	전송 기술	전송기술	전기통신기술사

직렬	계급		5 급 이 상	6 급 · 7 급	8 급 · 9 급
	직류	직류			
전자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		전자기술사	전자기사1급	전자기사2급
전산	전산		정보처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1급 전자계산기사1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1급	정보처리기사2급 전자계산기사2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2급
<p>비고 : ①위 표 중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등 직렬 등 직류의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p> <p>②6급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6급·7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8급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8급·9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1년 6월의 기간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p> <p>2. 국가기술자격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p>					
직렬	계급		5 급 이 상	6 급 · 7 급	8 급 · 9 급
	직류	직류			
전기	원자력		방사선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5)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축산	축산		수의사(5)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보건	보건		의사 한 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5) 약사(5) 작업치료사(8)	수의사 약사 작업치료사(2)	작업치료사

직렬	계급		5 급 이 상	6 급 · 7 급	8 급 · 9 급
	보	진			
보건	보	진	임상병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위생사1급(4) 위생사2급(10) 위생시험사1급(4) 위생시험사2급(10)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4) 간호사(8) 조산사(8)	임상병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위생사1급 위생사2급(6) 위생시험사1급 위생시험사2급(6)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영양사(3) 의무기록사 간호사(2) 조산사(2)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 영양사 간호사 조산사
환경	환	경	의 사 약 사(5) 수의사(5) 위생사1급(4) 위생사2급(10) 위생시험사1급(4) 위생시험사2급(10)	약 사 수의사 위생사1급 위생사2급(6) 위생시험사1급 위생시험사2급(6)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
비고 : ① 위 표 중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 직렬 동 직류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②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경력이어야 한다. ③ 6급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6·7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8급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8·9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1년 6월의 기간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7)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 및 제22조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직 령	직 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 류	제			
공업연구	기	제	기계기술사	기계기사1급 철도차량기사1급 건설기계기사1급 중기정비기사1급 계량기사1급 자동차정비기사1급 공정설계기사1급 치공구설계기사1급 품질관리기사1급 공기조화 및 냉동기계기사1급 용접기사1급 농업기계기사1급	
		전	전기	전기기술사	전기기사1급 전기공사기사1급 품질관리기사1급 신호보안기사1급
		전	자	전자기술사	전자기사1급 계측제어기사1급 품질관리기사1급 전자계산기사1급
		금	속	금속기술사	금속기사1급 품질관리기사1급
		섬	유	섬유기술사	섬유기사1급 품질관리기사1급 생사기사1급 외류기사1급
		화	공	화공기술사 산업용용기술사 [요 업] 식품제조가공	화공기사1급 공업화학기사1급 요업기사1급 식품제조가공기사1급
				화	학

직 렬	직급		연 구 관	연 구 사
	종 류	종 류		
농업연구	농 업	산업용용기술사 [농 화 학 식품제조가공]	농화학기사1급 식품제조가공기사1급	
		원 예	산업용용기술사(종묘) 원예종묘기사1급	
	임업연구	산업용용기술사 [종 묘 임산가공]	임업종묘기사1급 임산가공기사1급	
		잠업연구	섬유기술사[생사] 생사기사1급	
	축산연구	축산기술사, 수의사 축산기사1급, 수의사		
	가축위생연구	수의사 수의사		
	농공연구	기계기술사 [기계공작 공작기계 열원동기]	농업기계기사1급 기계기사1급	
보건연구		보건연구 의 사 한 의 사 치과 의사 약 사 수 의 사 환경관리기술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산업용용기술사 [식품제조가공]	약 사 수 의 사 환경기사1급 식품제조가공기사1급	
환경연구	환경연구 의 사 약 사 수 의 사 화공기술사 토목기술사 환경관리기술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산업용용기술사 [식품제조가공 지구 물 리 농 화 학] 해양기술사	약 사 수 의 사 화공기사1급 토목기사1급 환경기사1급 기상기사1급 공업화학기사1급 식품제조가공기사1급 농화학기사1급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해양기사1급		

2. 지도직공무원				
직 별	직 급		지 도 판	지 도 사
	직 류			
농촌지도	농 업	산업용용기술사	[식품제조가공 중 요 농 화 학]	식품제조가공기사1급
		[식품제조가공 중 요 농 화 학]		농화학기사1급 식물보호기사1급 원예종묘기사1급
	임 업	산업용용기술사	[임산가공 중 요 영 럽]	임업종묘기사1급
		[임산가공 중 요 영 럽]		임산가공기사1급 영림기사1급 조경기사1급
	잠 원	업	섬유기술사(생사)	선사기사1급
		예	산업용용기술사(종묘)	원예종묘기사1급 조경기사1급 식물보호기사
	축 산		축산기술사, 수의사	축산기사1급, 수의사
농업기계		기계기술사	[기계공작 공작기계]	기계기사1급
		[기계공작 공작기계]		중기정비기사1급 자동차정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1급 농업기계기사1급 건설기계기사1급 계량기사1급 소방설비기사1급 품질관리기사1급 열관리기사1급
농업토목		토목기술사	토목기사1·2급	
		[수 자 원 관개배수및농지조성 토지 및 기초 시공]	[수 자 원 관개배수및농지조성 토지 및 기초 시공]	축지기사1·2급
어촌지도	어촌지도	산업용용기술사 [수산제조] 해양기술사 환경관리기술사 [수질관리]	수산제조기사1·2급 수산양식기사1·2급 어토기사1·2급 해양기사1·2급 환경기사1·2급	
비고: 위 표 중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 직렬 동 직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봄.				

<별표 8>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 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3항 및 제22조 관련)

직	역	종급 분야	5등급	6·7등급	8·9등급	10등급
철 도 현 업	철 도 현 업	기계	철도동력차 기능장	철도동력차 기관 정비기능사 1급 철도동력차 전기 기능사 1급 객화차 정비기능 사 1급 열차조작기능사 1급	철도동력차 기관 정비기능사 2급 철도동력차 전기 기능사 2급 객화차 정비기능 사 2급 열차조작기능사 2급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계량기능사 2급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 3종지게차 조종사 열관리기능사 2급 기중기운전기능사 2급	철도동력차 기관 정비기능사보 철도동력차 전기 기능사보 객화차 정비기능 사보
		전기	전기기기 기능장 전기공사 기능장	전기기사 2급 전기공사기사 2급 전기공사기능사 1급 전기기기기능사 1급 전력설비기능사 1급 신호보안기사 2급 신호보안기능사 1급	전기공사기능사 2급 전기기기기능사 2급 발전설비기능사 2급 송배전설비기능사 2급 변전설비기능사 2급 신호보안기능사 2급	내선공사기능사보 외선공사기능사보 전기기기기능사보 동력배선기능사보

직렬	직류	등급 분야	5등급	6·7등급	8·9등급	10등급
철 도 현 업	철 도 현 업	통신	유선설비기능장	유선설비기사 2급 무선설비기사 2급 유선통신기계 기능사 1급 반송기기기능사 1급 데이터통신설비 기능사 1급	무선설비기능사 2급 유선통신기계 기능사 2급 반송기기기능사 2급 데이터통신설비 기능사 2급 인쇄통신기능사 2급	유선통신기계기능 사보
		건축	건축시공기능장 목공기능장	건축기사 2급 건축목공기능사 1급 건축도장기능사 1급 미장기능사 1급 조적기능사 1급 창호제작기능사 1급 은물기능사 1급	건축목공기능사 2급 건축도장기능사 2급 미장기능사 2급 조적기능사 2급 창호제작기능사 2급 은물기능사 2급	건축목공기능사보 건축도장기능사보 미장기능사보 조적기능사보 창호제작기능사보 은물기능사보
		환경 관리		환경기사 2급		
토 목	토 목			토목기사 2급 측량기사 2급 토목계표시험기사 2급 토목계표시험 기능사 1급 측량기능사 1급 이상 토목제도기능사 1급 이상 포장기능사 1급 콘크리트기능사 1급 이상 도화기능사 1급	토목계표시험 기능사 2급 측량기능사 2급 토목제도기능사 2급 포장기능사 2급 콘크리트기능사 2급 도화기능사 2급	포장기능사보 콘크리트기능사보

직명	직류	등급 분야	5등급	6·7등급	8·9등급	10등급
토 목	토 목			항공사진기능사 1급 지도제작기능사 1급 화학분석기능사 1급	항공사진기능사 2급 지도제작기능사 2급 화학분석기능사 2급	
건 축	건 축			건축기사 2급 조경기능사 1급 건축시공기능장 상호제작기능사 1급 은둔기능사 1급 조적기능사 1급 건축재료시험 기능사 1급 건축제도기능사 1급 이상 건축목공기능사 1급 이상 건축도장기능사 1급 미장기능사 1급 가구도장기능사 1급 광고도장기능사 1급 배관기능사 1급	창호제작기능사 2급 은둔기능사 2급 조적기능사 2급 건축재료시험 기능사 2급 건축제도기능사 2급 건축도장기능사 2급 미장기능사 2급 가구도장기능사 2급 광고도장기능사 2급 배관기능사 2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창호제작기능사보 은둔기능사보 조적기능사보 건축재료시험기능 사보 건축도장기능사보 미장기능사보 가구도장기능사보 광고도장기능사보 공업배관기능사보 건축배관기능사보
통 신	통 신			유선설비기사 2급 무선설비기사 2급 전파통신기사 2급 유선통신기계 기능사 1급 이상	무선설비기능사 2급 전파통신기능사 2급 유선통신기계 기능사 2급	유선통신기계기능 사보

직 별	직 류	등급 분야	5등급	6·7등급	8·9등급	10등급
통신	통신			반송기기기능사 1급 데이터통신설비기능사 1급 2급통신사 이상 유선통신선로기능사 1급	반송기기기능사 2급 데이터통신설비기능사 2급 인쇄통신기능사 2급 전화교환기능사 2급 음향영상기기기능사 2급 유선통신선로기능사 2급	음향영상기기기능사 사보 유선통신선로기능사 사보 유선통신기계기능사 사보
전기	전기			전기기사 2급 전기공사기사 2급 전기공사기능사 1급 이상 전기기기기능사 1급 이상 전력설비기능사 1급 신호보안기능사 1급	전기공사기능사 2급 전기기기기능사 2급 발전설비기능사 2급 송배전설비기능사 2급 변전설비기능사 2급 신호보안기능사 2급	내선공사기능사보 의선공사기능사보 전기기기기능사보
기계	기계			기계기사 2급 건설기계기사 2급 소방설비기사 2급 공기조화 및 냉동기계기사 2급 중기정비기사 2급 산업안전기사 2급 계량기사 2급	열관리기능사 2급 계량기능사 2급	

직 령	직 류	등급 분야	5등급	6·7등급	8·9등급	10등급	
기 계	기 계			자동차정비기사 2급 자동차검사기사 2급 원동기취급기능사 1급 이상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금형공구기능사 1급 이상 배관기능사 1급 이상 기계제도기능사 1급 용접기능사 1급 이상	원동기취급기능사 2급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금형공구기능사 2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배관기능사 2급 기계제도기능사 2급 전기용접기능사 2급 가스용접전기 기능사 2급 특수용접기능사 2급 선반기능사 2급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 로우더운전기능사 2급 스크레이퍼운전 기능사 2급 기중기운전기능사 2급 덤프트럭운전기사 2급 콘크리트믹서운전 기능사 2급	원동기취급기능사 2급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금형공구기능사 2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배관기능사 2급 기계제도기능사 2급 전기용접기능사 2급 가스용접기능사 2급 특수용접기능사 2급 선반기능사 2급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 로우더운전기능사 2급 스크레이퍼운전 기능사 2급 기중기운전기능사 2급 덤프트럭운전기사 2급 콘크리트믹서운전 기능사 2급	공업배관기능사보 건축배관기능사보 전기용접기능사보 가스용접기능사보 특수용접기능사보 선반기능사보

1953

직	별	직	류	등급	분야	5등급	6·7등급	8·9등급	10등급	
기	기	계	계	사	사		판금기능사 1급 이상 중기정비기능사 1급 이상	일반판금기능사 2급 중기정비기능사 2급 불도저운전기능사 2급 공기압축기운전 기능사 2급 사리채취기운전 기능사 2급 천정기중기운전 기능사 2급 준설운전기능사 2급 쇠석기운전기능사 2급 고압가스기계 기능사 1급 이상 원동기시공기능사 1급 열처리기능사 1급	일반판금기능사보 중기자체정비기능 사보 중기기관정비기능 사보 고압가스기계 기능사 2급 원동기시공기능사 2급 열처리기능사 2급	
						영사	영사기능사 1급 사진기능사 1급	영사기능사 2급 보도사진기능사 2급	보도사진기능사보	
난	난	방	방			열관리기능사 1급 원동기취급기능사 1급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고압가스냉동기계 기능사 1급 고압가스기계기능 사 1급 배관기능사 1급	열관리기능사 2급 원동기취급기능사 2급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고압가스냉동기계 기능사 2급 고압가스기계기능 사 2급 배관기능사 2급			

직 별	직 무	종급 분야	5등급	6·7등급	8·9등급	10등급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 제2종운전면허	
과 공	과 공			화공기사 2급 이상 환경기사 2급 이상 위험물취급기능사 1급 화학분석기능사 1급 고압가스화학기능사 1급 고압가스취급기능사 1급	위험물취급기능사 2급 화학분석기능사 2급 고압가스화학기능사 2급 고압가스취급기능사 2급	
선박	선박			3급항해사 이상	5급항해사 이상	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 기관	선박 기관			3급기관사 이상	5급기관사 이상	6급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농림	영림			영림기능사 1급	영림기능사 2급	영림기능사보
	원예			원예종묘기능사 1급 임업종묘기능사 1급 조원기능사 1급 화훼재배기능사 1급	원예종묘기능사 2급 임업종묘기능사 2급 조원기능사 2급 화훼재배기능사 2급	원예종묘기능사보 임업종묘기능사보 조원기능사보 화훼재배기능사보
보건	보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사(5) 조산사(5)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직 별	직 류	등급	5등급	6·7등급	8·9등급	10등급
		분야				
위생	위생			위생사 2급(3) 위생시험사 2급(3) 영양사(3)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조리사 1급 영양사	이·미용사 조리사 2급
	사역			영양사(3) 조리장	영양사 조리사 1급 오물처리사 1급	조리사 2급 오물처리사 2급
사무 보조	필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영문속기 2급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주산 1급 부기 1급	자료입력기능사보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3급 한글타자 2·3급 영문타자 2·3급 주산 2·3급 부기 2·3급
	타자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한글타자 2·3급 영문타자 2·3급 자료입력기능사보
	계리				주산 1급 부기 1급	주산 2·3급 부기 2·3급
	사서				2급정사서 이상	준사서 준사서
전산	전산			전자계산기기능사 1급 정보처리기사 2급 정보처리기능사 1급	전자계산기 기능사 2급 정보처리기능사 2급	자료입력기능사보
<p>비고 : 1. 위 표 중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등 직렬 동 직류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p> <p>2. () 안의 숫자는 해당등급에 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종사한 경력이어야 한다.</p> <p>3. 6등급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6·7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8등급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8·9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1년 6월의 기간 임용예정직의 업무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p>						

직무분야		특별임용계급상당경력기준(제19조제4항 관련)								
		임용예정 계급	2급· 지도관	3급· 지도관	4급· 지도관	5급· 지도관	6급· 기능직 6등급 이상· 지도사	7급· 기능직 7등급 이상· 지도사	8급· 기능직 8등급	9급· 기능직 9등급 이하
경찰공무원	원	치안감	경무관	총경	정경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원	소방감	소방감	소방장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일등상사· 이등상사· 중사		하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및기타 교육공 무원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교원	교수(3년 이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고등학교 교원	공무원보수 규정별 표 11. 적용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대학교 교원	공무원보수 규정별 표 12 중 대학봉급 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타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별 표 12 중 전문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상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하		
관사·점사		4호봉 이상	6호봉 이상	9호봉 이상						
별정직공무원	원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기능직공무원						6등급 이상	7등급	8등급	9등급 이하	
고용직공무원									1종·2종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박사학위소지 후 13년 이상	박사학위소지 후 10년 이상	박사학위소지 후 5년 이상	박사학위소지자					
비고: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 경력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 연수에 달한 때에 특별임용할 수 있다. 3. 위 표 중 소방공무원·별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경력은 국가공무원 경력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을 말하며, 고용직공무원의 경력은 1992년 8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별표 10>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 특별임용예정직급 및 전공학과 구분표(제19조제5항 관련)		전공과목
임용예정 직렬	직급	
행정직	7급	세무학과, 도시행정학과, 경영학과, 영어영문학과, 법과, 행정학과, 회계학과
전산직	"	전산통계학과
토목직	"	토목공학과, 도시계획학과
건축직	"	건축공학과
화학직	"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임업직	"	조경학과, 환경원예학과
전기직	"	전자공학과
환경직	"	환경공학과
보건연구 환경연구	연구사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별정직	7급상당	산업미술학과, 환경조각학과

〈별표 11〉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9조제6항 관련)	
직 군	직 령	해 당 학 과	비 고
공 업	기 계	기계, 자동차(자동차경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 공업, 재량	
	전 기	전기, 전자, 원자	
	심 유	심유, 방직, 제직, 염색	
	화 공	화공(공업화학, 분석화학, 화학, 물리)	
	조 선	조선, 조선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철(주물, 특형주조), 판금용접	
광 무	채 광	광산, 자원개발, 지질	
농 립	농 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임 업	임업	
	축 산	축산	
수 산	수 산	어업, 증식, 가공, 수산경영	
시 설	토 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축	건축(건축설비)	
	측 지	토목(토목건설)	
통 신	통 신 사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 신 기 술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 송 기 술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 자 통 신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별표 12> 특별임용예정제급별 소요경력연수(제19조제7항 관련)			
계 급	2 급	3 급	4 급
연구 경력	13년	10년	5년
비고: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 후 연구경력임.			
<별표 13> 연구직장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 면제직렬(제22조 관련)			
연구 직 령 (직 류)		기 술 직 령 (직 류)	
공 업 연 구 (기계)		기 계	
공 업 연 구 (전기, 전자)		전 기	
공 업 연 구 (철유)		삼 유	
공 업 연 구 (화학)		화 공	
공 업 연 구 (금속)		금 속	
농 업 연 구 (농업연구)		농 업(농업), 농촌지도(농업)	
농 업 연 구 (장업연구)		농 업(장업), 농촌지도(장업)	
농 업 연 구 (임업연구)		임 업(임업), 농촌지도(임업)	
농 업 연 구 (축산연구)		축 산	
보 건 연 구 (보건연구)		보 *진	
환 경 연 구 (환경연구)		환 경	

(별표 14) 지방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수분표(제31조 관련)					
연 구 관			지 도 관		
직위의 종류	직위명	종 전 계 급	직위의 종류	직위명	종 전 계 급
1. 기관의 장인 연구관의 직위 가. 담당업무의 범위와 감독 책임성의 정도가 큰 시·현연구기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나. 담당업무의 범위와 책임의 정도가 큰 시·현연구기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다. 담당업무의 범위와 감독, 책임성의 정도가 상당한 시·현연구기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라. 감독, 책임성이 요구되는 시·현연구기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보 건 관 경 연 구 원 장	1 급	1. 기관의 장인 지도관의 직위 가. 담당업무의 범위와 감독, 책임성의 정도가 큰 지도관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나. 담당업무의 범위와 감독, 책임성의 정도가 상당한 지도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다. 감독, 책임성이 요구되는 시·현지도관의 장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농촌지 도소장	2-3급 4 급 5 급
		2-3급			
		4 급			
		5 급			
2. 부서의 장인 연구관 가. 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연구, 시험, 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하는 직무를 행하는 연구관의 직위		3 급	2. 부서의 장인 지도관의 직위 가. 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매우 광범위한 지도업무에 대하여 총괄, 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3 급

연구관			지도관		
직위의 종류	직위명	종 전 계 급	직위의 종류	직위명	종 전 계 급
나.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연구, 시험, 조사업무에 대하여 총괄, 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보 건 환경 연구원 부장급	4 급	나.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도업무에 대하여 총괄, 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4 급
다.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연구, 시험, 조사 업무에 대하여 총괄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보 건 환경 연구원 과장급	5 급	다.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지도업무에 대하여 총괄, 조정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기술 담당관	5 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구관		4 급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도관		4 급
가. 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특히 곤란한 연구, 시험, 조사업무를 행하는 직무를 행하는 직위			가. 매우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특히 곤란한 지도업무를 행하는 지도관의 직위		
나. 연구, 시험, 조사업무를 행하는 연구관의 직무를 행하는 직위		5 급	나. 지도업무를 행하는 지도관의 직위		5 급

(별표·16) 공무원 승진시험과목(6급 이하에의 승진)(제35조 관련)

직렬별	직급별	6급에의 승진		7·8급에의 승진	
		필 수	선 택	필 수	선 택
행정직	헌법 행정법		행정학, 제정학, 경제원론, 도시학 개론 중 1과목	행정법	행정학, 제정학, 경제원론, 도시학 개론 중 1과목
보건직	생물학개론 공중보건학		전염병관리학, 보 건행정학 중 1과 목	생물, 공중보건, 환경위생	
토목직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측량학, 수리학, 토목시공학, 도시 계획학 중 1과목	물리, 측량, 응용 역학	
건축직	물리학개론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도시 계획, 구조역학 중 1과목	물리, 건축구조, 건축계획	
기계직	물리학개론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재료 역학 중 1과목	물리, 기계설계, 기계공작일반	
전기직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전기기계, 송배전 공학, 발전공학 중 1과목	물리, 전기통신, 전력	

직급별 직렬별	6급에의 승진		7·8급에의 승진	
	필 수	선 택	필 수	선 택
지 적 직	물리학개론 지적학개론	지적측량학, 지적 법규 중 1과목	수학(1), 측량, 지 적법규	
농 업 직	생물학개론 제배학원론	토양학, 수도라, 전작 중 1과목	생물, 작물(식용작 물), 토양비료	
임 업 직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임경 학, 삼림보호학 중 1과목	생물, 조림	삼림보호, 수목, 조경 중 1과목
화 공 직	화학개론 단위조각 화학열역학		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축 산 직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축산 경영학, 가축육종 학 중 1과목	생물, 가축사양, 가급 및 가축	
수 의 직	수의미생물학, 수의공중위생학	수의전염병학, 수 의약리학, 수의기 생충학 중 1과목	생물, 수의위생, 수의전염병	
약 무 직	약제학 약전학	공중보건학, 약물 학, 유기약품제조 화학, 무기약품제 조화학 중 1과목		
간 호 직	간호학개론 간호관리학	성인간호학, 지역 사회간호학, 모·아 간호학 중 1과목	간호학개론, 지역 사회간호학, 모·아 간호학	
* 기타직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당해직급의 특채 및 전직시험 제2차 과목에 의한다.				

(별표 17)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준표(제38조 관련)					
경력 임용 계급	연구직		지도직		
2 급	〈별표2〉 제1호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별표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	〈별표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	〈별표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10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8 급			지도사로 재직한 기간		
9 급					
비교 : 〈별표 2〉, 〈별표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8)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표(제38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구분	5급	6급·기능직 6등급 이상	7급·기능직 7등급	8급·기능직 8등급	9급·기능직 9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5급외교직 5급외무행정직 5급외신직	6급외무행정직 6급외신직	7급외무행정직 7급외신직	8급외신직	9급외신직
경찰공무원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소방령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교육공무원	조교수 중등학교교장	대학전임강사 13호봉이상의 장학사, 중등 학교교감, 13 호봉 이상의 중등학교교사 국민학교교장	대학조교, 14 호봉 이하의 장학사, 14호 봉이하 22호봉 이상의 중등학 교교사, 국민 학교교감, 13 호봉이상의 국 민학교교사	23호봉이하의 중등학교교사, 14호봉이하 22 호봉이상의 국 민학교교사	23호봉이하의 국민학교교사

상당계급 구분	5급	6급·기능직 6등급 이상	7급·기능직 7등급	8급·기능직 8등급	9급·기능직 9등급 이하
군 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일등상사, 이 등상사, 중사	하사
군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국 가 안 전 기 획 부 직 원	5급	6급 기능직 6등급 이상	7급 기능직 7등급	8급 기능직 8등급	9급 기능직 9등급 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별지 제1호서식) (자치단체명) 공 개 임 용 시 험 실 시 계 획 분류기호 수 신					
시 험 명	시험시행일자	선발예정인원			특 기 사 항
		직 급	직 별(직류)	인 원	

* 시험시행일자는 필기·면접구분

(별지 제2호서식)

(자치단체명)

시험 실시 결과 보고

분류기호
수 신

년 월 일
발신 인

1. 임용시험 실시상황

가. 급류별

구분	계	공 개 임 용					특 별 임 용			전 직			
		시험 회수	모집 인원	응시 인원	합격 인원	합격 인원중 임용 인원	합격 인원중 미임용 인원	시험 회수	응시 인원	합격 인원	시험 회수	응시 인원	합격 인원
급류별													
계													

나. 직렬별

구분	계	공 개 임 용					특 별 임 용		전 직				
		모집 인원	응시 인원	합격 인원	합격인원중 임용 인원	합격인원중 미임용인원	응시 인원	합격 인원	응시 인원	합격 인원	합격 인원		
직렬별													
계													

2. 공개임용시험 합격자분석

가. 직렬별

직급	직렬	계	행정	전산	기계	전기	조선	금속	섬유	화공	제강	농림	수산	수의	...
계															

나. 연령별												
구분	계	18-19	20	21	22	23-24	25-26	27-30	31-35	36-40	41이상	
계												
행정												
기술												
다. 학력별												
구분	계	중졸이하	고졸	고졸	대졸	전문대졸	대퇴	대졸	대학원졸			
계												
행정												
기술												
라. 군복무 여부												
구분	계	필(면제)			미 필							
계												
행정												
기술												
마. 학력-계열별												
구분	계	인문계	실업계									
계			소계	통계	비통계							
행정												
기술												
※ 공개임용시험합격자 분석은 총괄과 직급별로 별도 작성												
3. 특별임용시험합격자 요건별 현황												
자격요건	구분	자격증 소지자	군 두 경력자	지역개발유공자					실업계 졸업자	장학금 수령자	외국어 능통자	연고지 근무자
				소수상	표창유자	새마을지도자	청소년회	예비군중				
계												
행정												
기술												

(별지 제3호서식)		용 시 원 서 (원본)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나는 ① 계 회		급	등급	직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공고사항의 응시자격은 적합한 자로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임용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시험시 응시자 주의사항 및 감시관 지시사항을 엄수하고 위반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99 년 월 일		성명 ②	
② 주 소		시 구 동 가 번지 호			
		19 년 월 일 학교(과 년) 졸업·준업예정			
③ 의 중 출 신 학 교		※ 19 년 월 일 학교(과 년) 졸업		수료·제 학	
④ 경 력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⑤ 선 택 과 목		⑥ 국가유공자및제대군인 가 산 기표란		⑬ 주 산·타 자. 기타 자격증	
				1표시 2표시 3표시 4표시 5표시 6표시 7표시 8표시	
⑦ 용 시 계 급		직 등 급		⑨ 성 명 (한 글)	
⑧ 용 시 직 별		() ()		⑫ 남 성 여 성	
※ 용 시 번 호		부 호		⑩ 생 년 월 일 19 년 월 일 생(세)	
				⑪ 주민등록번호	
				-	
----- 계 인 -----					
⑭ 용 시 계 급		급 등 급		용 시 원 서 (부 본)	
				⑮ 계 회 등 급 직 공 체 시 험	
⑮ 용 시 직 별		() ()		⑯ 성 명 (한 자)	
※ 용 시 번 호		부 호		⑰ 생 년 월 일 19 년 월 일 생(세)	
				⑱ 주민등록번호	
				-	
----- 계 인 -----					
⑳ 용 시 계 급		급 등 급		용 시 표	
				㉔ 계 회 등 급 직 공 체 시 험	
㉕ 용 시 직 별		() ()		㉖ 성 명	
※ 용 시 번 호		부 호		㉗ 생 년 월 일 19 년 월 일 생(세)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위원장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횟수 및 시험명 ① ⑬ ⑮... 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횟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⑨ ⑰ ⑲... 성명은 정자로 기재하되 ⑨ ⑰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번지, 봉, 반 및 전화번호)을 기재할 것.
4. 최종출신학교 ③...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년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수 학구분 중 해당하는 것에 ○표 할 것. 다만, 최종출신학교가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수료)인 경우에는 그 출신대학을 ※란에 기재할 것.

5. 경력 ④... 공공기관에 종사한 경력(군 경력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 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6. 선택과목 ⑤...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수입증지 첨부란

7. 가산기표란 ⑥
 - 가. 1표시(10% 해당자) : 국가유공자 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예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나. 2표시(5% 해당자) :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계대군인(전투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 계대자 포함)
 - 다. 3표시(3% 해당자) : 2년 미만의 복 무기간을 마치고 전역된 계대군인(방 위소집 해제자, 자연계 교원 요원 포함)

라. 4표시(1.5%)~6표시(0.5% 해당자)

구 분	가점표시	4 표 시(1.5%)	5 표 시(1.0%)	6 표 시(0.5%)
주 산		1 급 이 상	2 ~ 3 급	4 ~ 5 급
타 자		1 급	2 급	3 ~ 4 급

마. 7표시(3%) 및 8표시(2% 해당자)

적 급	가점표시	7 표 시 (3%)	8 표 시 (2%)
9 급		기사 2급 이상, 기능사 1급 이상	기능사 2급
7 급		기사 1급 이상	기사 2급, 기능사 1급 이상

※ 가산기표판의 해당여부 및 중복시 기재 사항 등을 응시요강을 참고할 것.

8. 응시계급 ㉗ ㉘ ㉙...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9. 응시직렬 ㉚ ㉛ ㉜...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 안에는 당해 직렬 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10.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은 기재하지 말 것.

11. 생년월일 ㉝ ㉞ ㉟...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연령을 기재할 것.

12. 주민등록번호 ㊱ ㊲... 주민등록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13. 성별 ㊳ ㊴... 해당하는 성별에 ○표할 것.

14. 사진란 ㊵ ㊶ ㊷...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탈모, 상반신 사진(동일 원판의 것으로서 얼굴 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첨부할 것.

15. 우무인 ㊸...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 말 것.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 및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십시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첨부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 지참 재교부(시험시행일 3일 전)받아야 합니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시험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시험실 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종의 대여등을 일체 금하며 일단 입실한 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임의 퇴장할 수 없습니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당합니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용 시 원 서 부 본 침 부 단

17. 재산상황 ㉠ 부동산 평 [가옥
입야
전답] 평 ㉡ 동 산(원)

18. 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직	업	현	주	소

19. 가족상황

본인과의관계	성	명	성	별	직	업	생	년	월	일	최	종	학	력	비	고

20. 첨부서류	호	적	초	본	신	원	증	명	원	학	력	증	명	서	병	적	증	명	서	주	민	등	록	초	본	신	원	진	술	서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199 년 월 일

출원자

㉠

서울특별시 강귀하

21.	
우	
무	
인	

<p style="text-align: center;">임용후보자 등록요령</p> <p>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등록하십시오.</p> <p>1. 등록기간</p> <table border="0" style="margin-left: 40px;"> <tr> <td style="padding-right: 20px;">년</td> <td style="padding-right: 20px;">월</td> <td style="padding-right: 20px;">일부터</td> <td style="padding-right: 20px;">일간</td> </tr> <tr> <td>년</td> <td>월</td> <td>일부터</td> <td></td> </tr> </table> <p>2. 등록장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p> <p>3. 구비서류</p> <p>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 부착란에 필히 사진을 부착하십시오. 2통</p> <p>나. 호적초본(반드시 호적면제 사유와 신분사유가 기재된 호적초본) 2통</p> <p>다. 신원증명원(임용후보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적지의 시·구, 읍·면장 발행) 1통</p> <p>라. 학력증명서(최종 출신학교) 1통</p> <p>마. 주민등록초본 1통</p> <p>바. 병적확인서(남자 병역필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대신함) 1통</p> <p>사.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 시) 1통</p> <p>아.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등록원서 접수시 원본지참) 1통</p> <p>자. 신원진술서(소정 용지) 사진첨부 4통</p> <p>차. 군사원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보존처 발행 관계증명서 1통</p> <p>이상 구비서류를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하되 특히 등록원서와 신원진술서에는 사진을 첨부하는 것에 유의하기 바랍니다(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것과 같은 원판의 사진).</p> <p>4. 등록원서 제출방법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십시오.</p>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부터		<p>5. 원서 기재요령</p> <p>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타자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성명은 () 안에 한자로 쓰십시오.</p> <p>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되 연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하십시오.</p> <p>다. 각란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기재할 것이며 ※표 난은 기재하지 않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 : 한글과 한자를 병기해야 합니다. 4. 성별 : 남·여 해당 <input type="checkbox"/>에 <input type="checkbox"/>표를 하십시오. 6. 희망지구 : 주소지, 연고지 등을 참작하여 기재하십시오. 7. 현주소 : 주민등록지와 일치하여야 하며 동, 반까지 명기하십시오(①번란에 기재). 8. 병역 : 미필자는 미필란에 제1국민역, 보충역 징집면제, 징집면제, 병역사유를 기재하십시오. 9. 학력 :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기입하되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으로 수업연수를 기입하십시오. 10. 자격, 면허 : 취득한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하십시오. 16. 경력 : 공무원경력과 일반사회경력을 기입하십시오. 17. 재산사항 : 부동산은 가옥·임야·전답 등으로 구분하여 평수로, 동산은 금액으로 기입하십시오. 19. 가족사항 : 가족명은 한문으로 직계 가족만 쓰고, 직업은 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21. 우부인 :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날인해야 합니다. <p>6. 신원진술서 기재요령</p> <p>가. 잉크를 사용하되 한글로 자필하십시오</p>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부터							

<p>오.</p> <p>나. 본적을 전적한 사람은 반드시 원적을 기재해야 합니다.</p> <p>다. 현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통·반까지 명기해야 합니다.</p> <p>라. 남자 기혼자는 처가를, 여자 기혼자는 친가를 가족사항 처가란에, 미혼자는 실가란 기재합니다.</p> <p>마. 보증인은 직계가족이 아닌 자로서 임용후보자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주변의 덕망을 갖춘 인사로 기재해야 합니다.</p> <p>바. 8. 15 이후 거주지 기재는 임용후보자 본인의 출생 후 거주지 이전사항을 기재하되, 가장 오래 거주한 주소지 4개소를 기재합니다.</p> <p>사. 해당없는 난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합니다.</p> <p>아. 좌·우무인란은 좌·우측 엄지손가락을 깨끗이 날린해야 합니다.</p> <p>자. 신원진술서 각장마다 상단여백에 증명사진을 1매씩 부착하십시오. (4매 중 2매는 좌측 상단에, 2매는 우측 상단에 부착해야 합니다.)</p>	
---	--

<별지 제6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19

수 신

참 조

제 목 :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배정된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서울특별시인사규
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직	렬	계	급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비	고

- 첨부 : 1. 압용자 명단 1부
- 2. 임용불용자 명단 1부
- 3. 미임용자 관계서류 1부

(발신기관명)

직 인

<p>〈별지 제7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실무수습계획서</p>							
성명		성별	남·여	생년 월일	년 월 일	주소	
시험 구분	()직 계 회 5급공무원시험	합격 일자		년 월 일	유효 기간	년 월 일	
학력		경력					
임용 상황	임용일자	임용부서	시보기간	시보단축기간	시보단축사유	보적부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월간	월		일자: 년 월 일 직위:	
수습 계획 및 수습 실적	배치 부서						
	수습 계획 기간	~ (일간)					
	수습 실시 기간	~ (일간)					

(별지 제8호서식)

실무수습보고서

직 급

성 명

수습실과명

평 정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평정요소	근무실과 (20점)		직무수행능력 (40점)				근무수행태도 (40점)				총계	
	직무의 양 (10점)	직무의 질 (10점)	지식및 기 (10점)	이해및 판단력 (10점)	창의력 (10점)	관리및 통솔력 (10점)	책임감 (10점)	적극성 (10점)	협조성 (10점)	성실성 및 규율 준수 (10점)		
배점	우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0
	람	6	6	6	6	6	6	6	6	6	6	60
	가	3	3	3	3	3	3	3	3	3	3	30
평 정 점												
기 타 의 견												
장 래 성												

상기와 같이 평정함.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표 제9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19

수 신

참 조

제 목 : 공무원 승급발령(보고)

1.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호봉승급발령함(보고합니다).

소 속	직 급	성 명	발령호봉	발 령 전		호봉사정 경력기간	비 고
				호 봉	승급일자		

발령일자 19 년 월 일자

(발신기관명)

적 인

(별지 제10호서식) 정년연장신청서			
① 소 속		② 직 급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직 위 (담당업무)		⑥ 현직급근무기간	19 ~ 19 (년 월)
⑦ 연장신청기간		⑧ 근 속 연 수	년 - 월
⑨ 비 고 (자격증, 면허증 기타)			
<p>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㉞</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첨부서류</p> <p>* 신청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에 의한 건강진단카드 사본 또는 건강진단서 1통(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것) 2)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소지자에 한함) <p>* 임용권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년연장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의견서 1통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3) 최근 3년간 복무상황(휴직사유 및 기간, 병가사유 및 일수 등) 1통 			